

의안번호	2217347
의 퇴 인	허성무의원
회 답 일	2026.6.26.
추 계 번호	26D1364
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2항(청원경찰경비)	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6조제2항(청원경찰경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공공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 개선(안 제6조제2항)

-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
 - － 공공기관 등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봉급과 감독자 직책수당은 경찰청에서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(경찰직공무원 순경 봉급표)과 감독자 직책수당에 따르며 이를 해당기관에서 지급하는 최저부담액으로 규정하고, 이외의 수당은 해당기관의 취업 규칙 또는 내규에 근거하여 지급

[표 1]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

재직기간		적용하는 경찰공무원 계급
국가 지방자치단체	15년 미만	순경
	15년 이상 23년 미만	경장
	23년 이상 30년 미만	경사
	30년 이상	경위
공공기관 등	구분 없음	순경

- 예를 들어 2호봉으로 시작하여 15년 재직한 청원경찰의 봉급을 비교하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경장 15호봉에 해당하여 봉급이 3,416,000원 이고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우 최저부담액 기준은 순경 15호봉으로 3,070,500 원 이상으로 추정
- 공공기관 등에서 최저부담액 이상으로 봉급을 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하나, 개정안의 취지와 예시를 고려하였을 때,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인원, 평균 봉급, 1인당 봉급 증가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곤란
 - 참고로,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청원경찰은 총 12,323명이고 소속별로는 국가 3,419명, 지방자치단체 5,967명, 공공기관 등 2,937명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